

(2023년 상반기 1차) 물류 컨설팅 지원 사업 공고

1

사업 목적

-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체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

2

사업 개요

- 주관 : 물류산업진흥재단

- 대상

- 국내 중소기업 00개사 (* 신규 지원기업은 우선 선발)

※ 자산총액 5,000억원 미만 / 3년 평균매출액 800억원 이하

※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(대기업)에 속하지 않은 기업

※ 창업 후 3년 이상된 기업

※ 화주기업이나 물류의 기능을 직접 수행하고, 물류센터/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

- 지원 내용

구분	세부 분야
물류운영전략 및 프로세스	-물류비 개선 방안 설계 -물류 네트워크(거점/수배송)개선방안 설계 -물류 운영효율 개선(Capacity, 자동화 등) -AEO(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)공인 지원 등 *공인획득시 혜택(첨부자료 참고)
물류현장	-서비스/품질 혁신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-물류센터 운영 레이아웃 개선 -입출고 작업 생산성 개선방안 -적정재고 관리방안(물동량 분석, ABC분석) 등
물류IT	-기존 물류 시스템 개선 -IT솔루션 신규도입 자문 -정산 마감업무 자동화 방안 -ERP 연동을 통한 물류 프로세스 개선 등
안전보건	-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업무 개선 -안전 관련 운영 프로세스, 매뉴얼 구축 등
환경경영	-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기준 설정 -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인증 지원 등
경영일반	-ISO인증(안전보건, 환경경영, 품질경영) -인사/노무 프로세스 진단 및 개선 ((예시). 근로감독점검대비, 취업규칙 등) -세무/회계 프로세스 진단 및 개선 ((예시). 재무회계 결산 프로세스, 재무제표 가이드/ 법인세, 종합소득세 등 각종 신고 및 세무진단 등)

- 신청서 접수 기간 : 2023년 2월 8일(수) ~ 3월 3일(금)까지
- 컨설팅 기간 : 2023년 4월 ~ 6월 中
 - * 3자(재단/수혜기업/컨설턴트)간 협의를 통해 기간 및 횟수 최종 결정
 - * 지원분야에 따라 평균 4주 ~ 8주 소요 (AEO공인인증지원은 평균 10개월 소요)
- 비용 : 전액 지원(단, 재단 지원 예산 내)
 - * AEO공인인증 지원의 경우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

3 사업 수행 절차



4 심사 기준

- 1차 서류심사
 - 국내 중소기업(자산총액 5,000억원 미만 / 3년 평균매출액 800억원 이하)
 -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(대기업)에 속하지 않은 기업
 - 창업 후 3년 이상된 기업

-화주기업이나 물류의 기능을 직접 수행하고, 물류센터/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

■ 2차 발표심사(세부 심사 항목 평가를 통한 정성·정량적 평가)

- 컨설팅 필요성(지원 사업 신청 취지, 목적 및 배경 등)
- 컨설팅 실효성(지원의 실질적인 효과여부, 개선가능성, 즉시 효과성 등)
- 컨설팅 효과의 지속가능성(향후 컨설팅 개선을 통한 사업, 투자 지속 가능여부 등)

* 평가위원회는 주관기관(물류산업진흥재단)에서 구성 및 운영

*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컨설팅 필요성, 실효성, 기대효과 등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고득점 순위로 기업 선정

* 동등한 심사 결과가 나올 경우, 신규업체 우선 선발

5

사업 신청

■ 접수방법

- 재단 홈페이지 내, 온라인 신청(회원가입 필수)

사업 -> 컨설팅 지원 사업 -> 2023년 상반기 1차 컨설팅 지원 사업

■ 온라인 제출서류

- ① 2023년 물류 컨설팅 지원 사업 온라인 신청서(재단 홈페이지 신청 페이지)
- ② 표준재무제표[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] 최근 3년간(재단 홈페이지 신청 페이지 內)
-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(재단 홈페이지 신청 페이지 內)
- ④ 회사소개자료(재단 홈페이지 신청 페이지 內)
- ⑤ 사진(필요시 별도 요청)

■ 문의

- 운영부, 컨설팅 지원사업 담당자 (메일 : sjin@klip.or.kr, 전화 : 02-3279-3208)

6

유의사항

■ 지원 제외 대상

- 사업 신청시, 유사 사업을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
- 사전 협의 없이 컨설팅 지원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
- 신청기업에 부도, 화의, 법정관리,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
- 기타 재단의 판단에 의거 지원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. 끝.